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6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웅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함(안 제6조제2호).
- 나.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 시 관람료를 반환하도록 함(제8조제6항 신설).

다. 무료관람의 대상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확대함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4호,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, 같은 항 제4호, 제7호부터 제10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  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는 관람을 금지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<u>술에 취한자</u></p> <p>3. <u>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4.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자</u></p> <p>제8조(관람료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삭제</p>	<p>제6조(관람의 금지)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제8조(관람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
5. · 6. (생 략)
7.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
8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9.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
10.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② (생 략)

⑥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료를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

제9조(무료관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4. -----  
-----  
----- 사람
5. · 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 사람
8. ----- 사람
9. -----  
----- 사람
10. -----  
-----  
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